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
인력 1명(6급 1명)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2. 7. ~ 2024 2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6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.

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[별표 3]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한시정원표(제12조)

1. 제12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 : 2025년 1월 24일)	
총계	3
일반직 계	3
행정주사·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	1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	1
행정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	1
2. 삭제 <2023. 3. 28.>	
3. 제12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 : 2025년 3월 31일)	
총계	1
일반직 계	1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	1
4. 제12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 : 2025년 11월 30일)	
총계	2
일반직 계	2
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1
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	1
5. 제12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 : 2026년 12월 28일)	
총계	4
일반직 계	4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	2
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호사무관	
행정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·방송통신	2
주사 또는 방호주사	
6. 제12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 : 2026년 2월 26일)	
총계	1
일반직 계	1
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	1

< 신 · 구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한시정원) ① ~ ⑤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2조(한시정원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국립박물관단지 건립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6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.</u>